소상공인 사관학교 운영지침

중소기업청

목 차

Ⅰ 개요 1

1. 목적 ····· 1
2. 적용범위 ····· 1
3. 용어의 정의 ····· 1
4. 역할 및 추진체계 ····· 2
5. 위원회 구성 및 개최 ····· 4

Ⅱ 사업 운영 및 관리 5

1. 교육생 신청 및 선발 ····· 5
2. 교육운영 ····· 11
3. 점포체험 교육 ····· 13
4. 멘토링 ····· 17
5. 사후관리 ····· 19
6. 제재조치 ····· 20

[첨부] 관련 양식 ····· 21

Ⅰ 개요

1. 목 적

○ “소상공인 사관학교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2 및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13호)’에 따라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의 세부 사업인 “소상공인 사관학교”(이하 “사관학교”라 한다)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교육생**”이라 함은 만 19세 이상의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라 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를 말한다.

○ “**사관학교 교장**”(이하 “교장”)은 공단 전용교육장 소재 지방청장으로 하며, 교육생 선발, 강사 및 교육과정 편성 승인, 점포체험 선정 등 사관학교 주요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란 사관학교 교육생의 선발 및 평가, 강사 및 교육과정편성, 점포체험 교육생 선정 등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하며, 교장 포함 8인 이내로 구성한다.

○ “**전담매니저**”(이하 “매니저”)란 사관학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에 채용된 인력으로 교육생들의 이론교육 및 점포체험교육 과정 등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 “**사관학교 이론교육**”(이하 “이론교육”)이란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동 수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성공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론교육 과정을 말한다.

○ “**사관학교 점포체험교육**”(이하 “점포체험교육”)이란 사관학교 이론교육 과정을 수료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성공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 “**멘토링**”이라 함은 교육생들이 점포체험부터 창업까지 전반적인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경영기법이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활동을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 “**멘토링 업체**“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상담회사로 등록된 업체로서 사관학교 교육생 멘토링 업체로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4. 역할 및 추진체계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 사업 예산확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단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위원회 구성・운영
- 교육생 서면심사
- 교육생 및 점포체험자 관리
- 교육과정 및 강사 편성·운영
- 사업 홍보 및 사업 협약
- 사업비 집행
- 교육 및 점포체험 운영관리
- 사업 완료보고서 작성·제출
- 교육생 사후관리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기타 사관학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 위원회

○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교육생 및 점포체험교육 대상자 평가·선발
- 교육과정 및 강사풀 승인
- 사업화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
- 기타 사관학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 **추진체계**

추진단계	단계별 주요내용
① 사관학교 사업공고 (중기청, 공단)	• 교육생 모집 (중기청·공단 홈페이지 공고 및 언론매체 홍보 등)
② 신청접수 (공단)	• 각 전용교육장별 우편 및 방문 접수 (신청서, 사업계획서, 적성검사 결과표 등)
③ 교육생 선발 (공단, 위원회)	• 서면심사와 심층면접을 통한 교육생 선발
④ 이론교육 수행 (공단)	• 전용교육장별 교육 수행
⑤ 점포체험교육 수행 (공단)	• 이론교육 수료생의 80% 점포체험
⑥ 사관학교 완료보고 (공단)	• 사관학교별 작성 및 공단본부 종합
⑦ 교육성과평가 (공단)	• 교육생 교육 만족도 등 성과평가 실시
⑧ 결과보고 (공단 → 중기청)	• 교육실적, 교육성과 등을 종합하여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5. 위원회 구성 및 개최

○ 공단은 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장이 역임한다.

○ 공단은 사관학교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 및 심의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을 구성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사관학교 소재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담당과장에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Ⅱ 사업 운영 및 관리

1. 교육생 신청 및 선발

① 교육생 신청요건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로서 최근 3년간 공단에서 발굴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동 수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 신청 제외 대상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에서 제외한다.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교육 신청방법

□ 창업아이템

○ 최근 3년간 공단에서 발굴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동 수준에 해당하는 것

★ 신사업 아이디어의 정의

○ 소상공인 분야의 독창적인 창업 아이디어
○ 국내에 최근 소개되어 시장규모가 작지만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
○ 해외에서 사업화되었으나, 국내에 사업화가 미비한 유망 창업 아이디어
※ 단순 유통판매 아이디어, 프랜차이즈화 된 아이템, 지적재산권 제약으로 창업이 어려운 아이디어, 유흥향락업종 등은 제외

□ 신청방법

○ 사관학교에 입교를 희망하는 자는 입교 신청서(별표1), 사업계획서(별표1-붙임1),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별표1-붙임2)를 작성하고, 창업적성검사 결과표, 개인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업자등록여부 사실증명원, e-러닝 수강실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창업업종과 관련 있는 자격증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등을 첨부하여 해당 지역 전용교육장에 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단, 우편접수는 신청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 창업적성검사 : 워크넷(www.work.go.kr)접속→직업정보·심리검사→직업심리검사(성인용 검사)→창업적성검사(20분)→결과표 인쇄→제출
* 개인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이 필히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류
* e-러닝 수강실적 증빙서류 : 공단 홈페이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수료증 출력

③ 교육생 선발 및 평가

□ 서면심사

○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5인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서면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각 사관학교별 서면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관련 분야 대학교수
2. 소상공인 관련 분야 컨설턴트
3. 소상공인 관련 분야 연구원
4. 기타 소상공인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로서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 서면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사업아이템이 공단이 발굴한 신사업 아이디어가 아닌 경우 신사업 아이디어 심의평가표(별표2-붙임2)에 의거하여 신사업 아이디어에 준하는지를 심의하여야 한다.

- 신사업 아이디어 심의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서면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서면심사위원회는 서면심사 평가표(별표2-붙임3)에 따라 평가하여,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정원의 2배수 이내에서 서면심사 통과자를 선발한다.

○ 신사업 아이디어 심의평가 및 서면심사 평가점수는 서면심사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3인의 평균 점수로 한다.

○ 서면심사위원회는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사관학교 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자
-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필수서류인 사업계획서,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은 자
- 신청한 사업아이템이 최근 3년간 공단에서 발굴한 신사업 아이디어가 아니거나 동 수준에 준하지 않는 경우(신사업 아이디어 심의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 신사업 아이디어 심의평가 기준 >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평가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참신성 (20점)	▪ 사업아이템의 참신성 ▪ 기존 유사 사업아이템과의 차별성	20	16	12	8	4
시장성 (15점)	▪ 기존 유사 사업아이템과의 경쟁력 확보 가능성 ▪ 발굴아이템의 시장 진입 용이성	15	12	9	6	3
수익성 (15점)	▪ 주 고객층의 구매 또는 판매가능성 ▪ 이익창출 가능성	15	12	9	6	3
성장 가능성 (15점)	▪ 시장 확대 가능성(신규 시장형성 가능성) ▪ 다수의 창업 가능 여부	15	12	9	6	3
사업화 가능성 (20점)	▪ 국내도입 용이성(국내시장 적합여부) ▪ 사업 아이템의 지속가능성 ▪ 아이템 활용가능성	20	16	12	8	4
소상공인 적합성 (15점)	▪ 소상공인 사업진입의 용이성 ▪ 소액투자(2억원 내외)로 창업 가능여부	15	12	9	6	3
합 계(100점)		-				

< 서면심사 평가 기준 >

<table>
<tr><th>구 분</th><th>세부항목</th><th>배점</th></tr>
<tr><td rowspan="3">창업자 역량
(40)</td><td>○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table><tr><th>구분</th><th>매우 충실</th><th>충실</th><th>보통</th><th>미흡</th><th>매우 미흡</th></tr><tr><td>점수</td><td>20</td><td>16</td><td>12</td><td>8</td><td>4</td></tr></table></td><td>20</td></tr>
<tr><td>○ 창업의지, 창업동기 및 신청사유의 명확성
<table><tr><th>구분</th><th>매우 명확</th><th>명확</th><th>보통</th><th>미흡</th><th>매우 미흡</th></tr><tr><td>점수</td><td>15</td><td>12</td><td>9</td><td>6</td><td>3</td></tr></table></td><td>15</td></tr>
<tr><td>○ e-러닝 사전 수강실적(학습시간 기준)
<table><tr><th>구분</th><th>12시간 이상</th><th>8-11시간</th><th>4-7시간</th><th>1-3시간</th><th>미제출</th></tr><tr><td>점수</td><td>5</td><td>4</td><td>3</td><td>2</td><td>1</td></tr></table></td><td>5</td></tr>
<tr><td>창업적성검사
(50)</td><td>○ 창업적성검사 결과표의 1번 항목(창업적합성 진단결과)
<table><tr><th>구분</th><th>진단결과</th><th>창업적합성 점수</th></tr><tr><td>50점</td><td>매우적합</td><td>69～100</td></tr><tr><td>40점</td><td>적합</td><td>55～69</td></tr><tr><td>30점</td><td>노력필요</td><td>44～55</td></tr><tr><td>20점</td><td>많은노력필요</td><td>0～44</td></tr><tr><td>0점</td><td>자료 미제출</td><td>-</td></tr></table></td><td>50</td></tr>
<tr><td>개인신용평가
등급
(10)</td><td>○ 개인신용평가 등급
<table><tr><th>구분</th><th>등 급</th></tr><tr><td>10점</td><td>1～3등급</td></tr><tr><td>5점</td><td>4～6등급</td></tr><tr><td>0점</td><td>7등급 이하 또는 미제출</td></tr></table></td><td>10</td></tr>
<tr><td>가점
(자격증 보유 수)
(최대 5점)</td><td>○ 창업업종과 관련 있는 자격증 보유 수
<table><tr><th>구분</th><th>3개 이상</th><th>2개</th><th>1개</th><th>미제출</th></tr><tr><td>점수</td><td>5</td><td>3</td><td>1</td><td>0</td></tr></table></td><td>(5)</td></tr>
<tr><td>계</td><td></td><td>100</td></tr>
</table>

□ 면접심사

○ 면접심사 위원회는 서면심사통과자의 창업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면접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 면접심사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 중 5인으로 한다.

○ 면접심사평가 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나머지 위원의 평균점수로 한다.

- 동점자 발생 시 창업역량, 창업적성검사, 개인신용평가등급 점수 순으로 선발한다.

□ 입교자 선정

○ 위원회는 면접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수별 모집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 순으로 5인 이내의 후보자를 포함한 이론교육 대상자를 선정한다.

- 위원회는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를 우선하여 선발 할 수 있다.

○ 공단은 최종 심사결과를 선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교 여부를 결정하여 서약서(별표4)를 제출하여야 한다.

< 면접심사 평가 기준 >

구 분	세부항목	배점
창업준비도 (70)	○지원동기의 명확성	20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
	○전문성(기술력, 동업종 경력 등)	15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투자금액, 조달방안 등)	15
창업마인드 (30)	○창업의지, 열정, 적극성, 발전가능성 등	15
	○창업을 위한 개인노력, 사전준비 등	15
계		100

2. 교육운영

① 교육프로그램 수립

□ 교육 과정 편성

○ 교육 시간은 총 150시간 이내, 교육과정은 3단계로 구분하여 기본공통교육(50시간 이내), 경영전문교육(50시간 이내), 업종별 분반교육(50시간 이내) 등으로 구성한다.

- 기본공통교육 과정은 오리엔테이션, 기업가정신, 창업절차, 성공사례, 세무 및 법률 이해 등으로 구성한다.
- 경영전문교육 과정은 브랜드 경영, 자금조달, 원가 산정, 상권분석, 판촉전략, 상품전략, 디자인경영, ICT전략 등으로 구성한다.
- 업종별 분반교육 과정은 업종 혹은 아이템별 가격·상품전략, 유통·마케팅 전략, 실습 및 견학 등으로 구성한다.

○ 1일 교육 시간은 8시간 이내로 구성하고 업종 등을 고려해 스타강사 교육을 편성하여 교육생들의 참여 동기를 제고한다.

○ 교육생들의 교육성과 제고 및 성공 창업 준비를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 교육 과정 승인

○ 공단은 교육 과정 및 강사를 편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강사풀

□ 강사는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강사풀을 활용하며, 강사풀 이외의 강사를 활용할 시에는 공단의 강사등급 부여 및 강사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 공단은 스타강사 등 사관학교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투입할 수 있다.

③ 교육생 이론교육 중단

□ 공단은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교육생의 이론교육을 중단시킬 수 있다.

1. 공단의 승인 없이 총 7일 이상 결석하여 교육 진행에 심각한 차질을 야기한 경우(지각 2회는 결석 1회로 처리)

2. 교육생의 심각한 질병, 군입대 등의 중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교육생의 위법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하여 공단 교육시설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 교육생은 공단의 중단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교장은 해당 교육생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중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점포체험 교육생 선발

□ 위원회는 이론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점포체험에 참가할 교육생을 평가·선발한다.

○ 점포체험 교육생 선발심사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 중 5인으로 한다.

○ 위원회는 교육생들의 교육상태(출결상황 및 교육태도), 사업계획서(적절성, 구체성, 수익성 등), 발표평가(창업마인드 및 가치관, 실현 가능성 등)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이론교육 수료생의 80%를 선발한다.

○ 점포체험 교육생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나머지 위원의 평균점수로 한다.

< 이론교육 평가기준 >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부항목 및 평가지표</th><th>배점</th></tr>
<tr><td rowspan="2">교육상태
(20)</td><td>○ 출결상황
<table>
<tr><td>구분</td><td colspan="2">매우우수</td><td colspan="2">우수</td><td colspan="2">보통</td><td colspan="2">미흡</td><td colspan="2">매우미흡</td></tr>
<tr><td>출결
상황</td><td>100%
출석</td><td>지각
1회</td><td>결석
1회</td><td>결석1회·
지각1회</td><td>결석
2회</td><td>결석2회·
지각1회</td><td>결석
3회</td><td>결석3회·
지각1회</td><td>결석
4회</td><td>결석4회·지
각1회이상</td></tr>
<tr><td>점수</td><td>10</td><td>9</td><td>8</td><td>7</td><td>6</td><td>5</td><td>4</td><td>3</td><td>2</td><td>1</td></tr>
</table>
※ 단 병가, 예비군훈련, 가족친족 사망 및 결혼은 예외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지각2회는 결석1회로 처리</td><td>10</td></tr>
<tr><td>○ 교육태도
- 참여도
<table>
<tr><td>구분</td><td>매우우수</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매우미흡</td></tr>
<tr><td>점수</td><td>5</td><td>4</td><td>3</td><td>2</td><td>1</td></tr>
</table>
- 성실도
<table>
<tr><td>구분</td><td>매우우수</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매우미흡</td></tr>
<tr><td>점수</td><td>5</td><td>4</td><td>3</td><td>2</td><td>1</td></tr>
</table>
※ 교육태도는 강사가 수업 종료 후 공단에 직접 제출</td><td>10</td></tr>
<tr><td rowspan="3">사업
계획서
(40)</td><td>○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의 적절성</td><td>15</td></tr>
<tr><td>○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td><td>15</td></tr>
<tr><td>○ 시장성 및 수익성</td><td>10</td></tr>
<tr><td rowspan="2">발표평가
(40)</td><td>○ 창업 마인드 및 가치관</td><td>20</td></tr>
<tr><td>○ 판매전략 및 마케팅 능력, 실현가능성</td><td>20</td></tr>
<tr><td>계</td><td></td><td>100</td></tr>
</table>

3. 점포체험교육

① 점포임대 및 지원범위

□ 공단은 점포체험 교육생들이 안정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사관학교별 인근 주요 상권에 있는 점포를 물색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 공단은 점포 임차 시 개별 또는 공동점포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점포를 임차하여야 한다.

○ 공단은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 보증금에 대한 전세권 등기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공단은 점포체험장의 임차 보증금, 월세, 권리금, 인테리어, 시설장비 임차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재료비 등 소모성 비용은 교육생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교육생은 1주일 단위로 점포체험 교육 수행일지(별표6)를 작성하여야 하며 체험완료 후 10일 이내에 점포체험 교육 완료보고서(별표7)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포관리 및 손해배상

□ 공단은 점포체험 교육기간 동안 교육생에 의한 물적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공단 명의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교육생은 점포체험장의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교육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체험장, 인접 건물 및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가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교육생과 공단 간에 점포체험장 관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공단본부가 위치한 관할 소재지의 법원으로 한다.

③ 교육생 점포체험 중단

□ 공단은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교육생의 점포체험을 중단시킬 수 있다.

1. 교육생이 공단의 승인 없이 7일 이상 점포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교육 진행에 심각한 차질을 야기한 경우

2. 교육생의 심각한 질병, 군입대 등의 중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교육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체험 시작 후 7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4. 교육생의 위법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점포체험에 중대한 차질이 야기된 경우

○ 교육생은 공단의 중단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교장은 해당 교육생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중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점포체험 평가

□ 공단은 교육생들의 점포운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점포별 매출액 정도, 월별 방문고객 수를 측정하여 점포체험 교육생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별표8-붙임2, 붙임3)

○ 공단은 점포체험 교육 시작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점포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점포체험교육 평가기준 >

<table>
<tr><th>구 분</th><th>세부항목</th><th>배점</th></tr>
<tr><td rowspan="2">점포
실적
(40)</td><td>ㅇ 월별 매출액 증가 추이(평가월 기준)
<table><tr><th>구 분</th><th>증가
(전월대비 10%이상)</th><th>고정
(전월대비10%미만)</th><th>감소
(전월대비 하락)</th></tr><tr><td>점 수</td><td>20</td><td>14</td><td>8</td></tr></table></td><td>20</td></tr>
<tr><td>ㅇ 월별 방문고객 수 증가 추이(평가월 기준)
<table><tr><th>구 분</th><th>증가
(전월대비 10%이상)</th><th>고정
(전월대비10%미만)</th><th>감소
(전월대비 하락)</th></tr><tr><td>점 수</td><td>20</td><td>14</td><td>8</td></tr></table></td><td>20</td></tr>
<tr><td>마케팅
활동
(20)</td><td>ㅇ 마케팅활동 회수(평가기간 기준)
<table><tr><th>구 분</th><th>15건 이상</th><th>14건~10</th><th>9건~7건</th><th>6건~4건</th><th>4건 미만</th></tr><tr><td>점 수</td><td>20</td><td>16</td><td>12</td><td>8</td><td>4</td></tr></table>* 온라인(페이스북, 블로그, 카스 등) 및 오프라인(전단지 배포 등) 활동 횟수</td><td>20</td></tr>
<tr><td rowspan="2">매장
운영
(20)</td><td>ㅇ 매장 청결도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점 수</th><th rowspan="2">합 계</th></tr><tr><th>평가 전월</th><th>평가월</th></tr><tr><td>우수</td><td>5</td><td>5</td><td>10</td></tr><tr><td>보통</td><td>3</td><td>3</td><td>6</td></tr><tr><td>미흡</td><td>1</td><td>1</td><td>2</td></tr></table></td><td>10</td></tr>
<tr><td>ㅇ 고객 친절도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점 수</th><th rowspan="2">합 계</th></tr><tr><th>평가 전월</th><th>평가월</th></tr><tr><td>우수</td><td>5</td><td>5</td><td>10</td></tr><tr><td>보통</td><td>3</td><td>3</td><td>6</td></tr><tr><td>미흡</td><td>1</td><td>1</td><td>2</td></tr></table></td><td>10</td></tr>
<tr><td>전담매니저
평가
(20)</td><td>ㅇ 문제점개선, 적극성, 태도 등(평가기간 기준)
<table><tr><th>구 분</th><th>매우 우수</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매우 미흡</th></tr><tr><td>점 수</td><td>20</td><td>16</td><td>12</td><td>8</td><td>4</td></tr></table></td><td>20</td></tr>
<tr><td>계</td><td></td><td>100</td></tr>
</table>

□ 위원회는 이론교육과 점포체험교육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신사업 사업화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천한다.(별표9)

4. 멘토링

① 멘토링 업체 등록·지정

□ 공단은 매년 1회 교육생 멘토링 업체를 신규 모집할 수 있다.

○ 공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된 업체 중 희망하는 업체를 등록하여 멘토링 업체로 활용한다.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상담회사 및 컨설턴트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요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시행 2014.12.3] [대통령령 제25807호]

제20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①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이 상근할 것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춘 사무실③법 제31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날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인력(제6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제1호 관련)

경 영 분 야	기 술 분 야
1.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전문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5.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6.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1.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와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4. 전문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기술지도사 6.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다. 국·공립 연구기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 협약의 체결

○ 공단은 교육생에게 멘토링 업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생들이 직접 멘토링 업체를 선택하도록 한다.

○ 멘토링 업체는 교육생과 멘토링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협의한 후 7일 이내에 멘토링 협약서 체결(별표11) 및 멘토링 수행계획서(별표12)를 작성하여야 한다.

- 멘토링 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자연재해 등) 7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멘토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협약의 해약

○ 공단은 멘토링 업체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 전 멘토링 포기
2.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3. 휴·폐업의 경우
4. 멘토링 착수가 지체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시 멘토링 수행 점검결과, 부실판정을 받은 경우
- 멘토링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사업관리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멘토링 방법

○ 멘토링은 상근인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상근 인력이 수행하는 경우 상근인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 비상근 인력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한 전문인력 자격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멘토링 기간은 멘토링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5개월까지로 한다. 단, 사관학교 1기 점포체험 교육생에 한하여 최대 6개월로 한다.

○ 멘토링 업체는 업체당 교육생을 최대 5명 이내에서 멘토링을 할 수 있다.

○ 멘토링 업체는 멘토링 완료 후 10일 이내 완료보고서(별표13)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성공판정

□ 멘토링 기간 내 교육생이 사업자등록 및 점포를 운영할 시 성공한 것으로 판정(사업장 현장방문 확인)한다.

○ 공단은 멘토링 업체에게 멘토링 성공시 2백만원을 지급하고 실패 시 5십만원을 지급한다.

5. 사후관리

□ 공단은 교육생의 경영성과 등의 성장 추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졸업 후 5년 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 공단이 사업성과 점검 및 후속 지원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졸업생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공단은 졸업생을 대상으로 사후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연계지원(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전시회 참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6. 제재조치

□ 공단은 동 지침을 위반하거나 서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멘토링 업체에 대하여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 참여제한,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조치는 공단에서 실시한 현장조사 등의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재여부를 결정한다.

○ 멘토링 업체는 공단의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공단은 해당 멘토링 업체를 심의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재기준 >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세 부 사 유</th><th>세부조치</th></tr>
<tr><td rowspan="2">경고</td><td colspan="2">불성실한 멘토링으로 교육생의 멘토링 업체 변경요청을 받은 경우</td><td rowspan="2">경고
(양벌규정)</td></tr>
<tr><td colspan="2">멘토링 사업 진행절차 및 규정 미준수</td></tr>
<tr><td rowspan="7">사업
참여
제한</td><td rowspan="2">1년</td><td>협약서 상의 컨설턴트와 다른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td><td rowspan="2">1년
참여제한
(양벌규정)</td></tr>
<tr><td>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td></tr>
<tr><td rowspan="5">영구
배제</td><td>컨설팅 완료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을 하는 경우</td><td rowspan="5">영구배제
(양벌규정)</td></tr>
<tr><td>허위서류 제출로 참여자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컨설턴트로 지정 받아 멘토링을 수행한 경우
(例: 자격,학력,경력 등 이력사항의 허위기재 등)</td></tr>
<tr><td>컨설팅 고유 업무 이외에 개인의 영리추구를 위해 교육생에게 구매 등을 강요한 경우</td></tr>
<tr><td>교육생의 영업정보나 기밀사항을 대외로 유출하거나 컨설턴트가 활용한 경우</td></tr>
<tr><td>사업참여제한(1년)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td></tr>
</table>

* 사업 참여제한은 제재 조치일로부터 적용한다.
* 위 제재기준 외에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소상공인 사관학교 관련양식

중소기업청

관련서식 및 평가지표

【별표1】: 입교 신청서 23
- [붙임1] : 사업계획서 24
- [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29
【별표2】: 서면심사 평가 종합보고서 30
- [붙임1] : 서면심사 종합표 31
- [붙임2] : 신사업 아이디어 심의평가표 32
- [붙임3] : 서면심사 평가표 33
【별표3】: 면접심사 평가 종합보고서 34
- [붙임1] : 면접심사 종합표 35
- [붙임2] : 면접심사 평가표 36
【별표4】: 입교서약서 37
【별표5】: 이론교육 평가 종합보고서 38
- [붙임1] : 이론교육 종합표 39
- [붙임2] : 이론교육 평가표 40
【별표6】: 점포체험 교육 수행일지 41
【별표7】: 점포체험 교육 완료보고서 42
【별표8】: 점포체험 교육 평가 종합보고서 43
- [붙임1] : 점포체험 교육 종합표 44
- [붙임2] : 점포체험 교육 평가 결과표 45
- [붙임3] : 점포체험 교육 평가표 46
【별표9】: 종합평가 보고서 47
- [붙임1] : 종합평가표 48
【별표10】: 멘토링 업체 등록 신청서 49
- [붙임1] : 기관현황 50
- [붙임2] : 보유인력 이력사항 52
【별표11】: 멘토링 협약서 53
【별표12】: 멘토링 수행계획서 56
【별표13】: 멘토링 완료보고서 57
【별표14】: 강사 만족도 설문지 59
【별표15】: 위원회 의결서 양식 60
【별표16】: 서약서(평가위원) 61
【별표17】: 교육생 명부 62
【별표18】: 교육생 출석부 63
【별표19】: 교육생 교육태도 평가표 64
【별표20】: 교육비 예산편성 기준 65
- [붙임1] : 강사 자격요건 및 강사료 지급기준 66

【별표1】 입교 신청서

「소상공인 사관학교」 입교 신청서

* 표지의 굵은 선 안은 기재하지 마시고 (*)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관리번호		접수번호	

사업아이템(*)				
희망 교육 장소(*)	☐ 서울 ☐ 부산 ☐ 광주 ☐ 대구 ☐ 대전			
입교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전 화(*)		핸드폰(*)	
	이메일(*)			
	자택주소			

「소상공인 사관학교」 운영지침에 따라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작성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붙임1>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2> 1부
3. 창업적성검사 결과표 원본 1부
4. 개인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본 1부
5.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 유무) 원본 1부
6. e-러닝 수강실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7. 창업업종과 관련 있는 자격증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끝

[붙임1] 사업계획서

「소상공인 사관학교」사 업 계 획 서

1 입교신청자 현황

* 표지의 굵은 선 안은 기재하지 마시고 (*)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관리번호						
사업아이템(*)						
사업자등록증 보유여부(신청일 기준)(*)		☐ 보유 ☐ 미보유				
업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기타				
학력	기 간		학 교 명	수 학 상 태	전 공	학 위
	부터	까지				
	.	.		졸업, 수료, 중퇴		
	.	.		졸업, 수료, 중퇴		
	.	.		졸업, 수료, 중퇴		
경력	기 간		주요 경력			
	부터	까지				
	.	.	업무내용 및 전문기술 위주로 간단 기술			
	.	.				
	.	.				
사업아이템 관련 주요 자격증						
사업희망아이템 관련 업종 근무기간		총 년 개월				

* 소상공인 사관학교는 성장가능성이 높고 고기술 및 지식을 접목한 창의적인 아이템(사업) 보유자를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임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시하는 신사업 아이디어를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사업 아이디어 확인방법 :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접속 → '신사업 아이디어'

2 창업동기 및 창업계획

창업동기 및 신청사유(*)	(예시) - 창업을 하는 동기 및 필요성 - 창업자로서의 각오와 열정, 의지, 성실성, 경영자로서의 자질 및 운영능력 등
창업아이템에 대한 전문성 (*)	(예시) - 소상공인CEO의 전공, 관련분야의 경력과 신사업 아이템과의 관계 - 신청 업종 혹은 유사 전문 자격증 보유 여부(해당시) 및 기술(제품)개발 경험 - 과거 사업화 진행 경험 또는 프로젝트 수행 경력 등

창업 준비도 (*)	(예시) - 신사업 아이템을 활용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실현가능성 - 투자금액, 조달방안 등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 - 기타 창업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
기타사항 (*)	(예시) - 교육생으로서의 포부, 5년 후 본인의 모습 등 비전제시 - 본인의 장점을 활용한 성공스토리 등

* 사업계획서 제출양식은 제시된 규격 안에서 작성하여 주시고, 창업아이템 및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자료는 자유양식으로 <별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이디어 소개서

1. 아이디어 기본정보(해당사항에 √ 표시)

아이디어명	*제안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에 대하여 20자 내외로 명료하게 표현*
아이디어 원천	□ 신사업 수록 아이디어(최근3년간) □ 신규 아이디어
사업화유형 (복수분류)	□ 제조기반 □ 상품기반 □ 외식업분야 □ 전문지식기반 □ 웰빙복지분야 □ 일반생활서비스기반
사업장분류 (단일분류)	□ 점포형 □ 사무실형 □ 이동형무점포 □ 재택형무점포 □ 기타복합형
투자규모 (단일분류)	□ 1천만원이하 □ 1~3천만원 □ 3~7천만원 □ 7천~1.5억원 □ 1.5억 이상

2. 아이디어 소개(서술식으로 자유롭게 작성)

주요내용	*아이디어에 대한 개요를 기술*

주고객 및 이용대상	*아이디어의 주고객층, 사용처 및 특징을 분석하여 기술*
유사창업사례 및 차별성	*아이디어와 유사한 사례 및 차별적 요소 기술*
수익성 및 성장가능성	*주고객층의 구매가능성 등 이익창출 가능성, O년 후 성장가능성 등 기술*

* 아이디어 소개서 제출양식은 제시된 규격 안에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본인과 관련하여 진흥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소상공인 사관학교 교육생 평가·선정, 교육일정 및 진행사항 안내 등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학력, 경력
-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사관학교 평가·선정·진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등이 다소 지연되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중소기업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 소상공인 사관학교 운영 현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휴대폰 번호, 이메일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 1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사관학교 평가·선정·진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등이 다소 지연되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 공단이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표2】 서면심사 평가 종합보고서

「제0기 0000 소상공인 사관학교」

서면심사 평가 종합보고서

평가자 : _____

평가자 : _____

평가자 : _____

평가자 : _____

평가자 : _____

년 월 일

[붙임1] 서면심사 종합표

「제0기 00 소상공인 사관학교」
서 면 심 사 종 합 표

구분	관리 번호	입교 신청자	사업아이템	평가위원 점 수					종합 평점	평균[1]	검토의견
				A	B	C	D	E			

1) 평균점수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 3인의 평균값으로 한다.

[붙임2] 신사업 아이디어 심의평가표(신설)

「제0기 00 소상공인 사관학교」
신 사 업 아 이 디 어 심 의 평 가 표

관리번호		평가일자	년 월 일
사업아이템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평가등급					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참신성 (20점)	▪ 사업아이템의 참신성 ▪ 기존 유사 사업아이템과의 차별성	20	16	12	8	4	
시장성 (15점)	▪ 기존 유사 사업아이템과의 경쟁력 확보 가능성 ▪ 발굴아이템의 시장 진입 용이성	15	12	9	6	3	
수익성 (15점)	▪ 주 고객층의 구매 또는 판매가능성 ▪ 이익창출 가능성	15	12	9	6	3	
성장 가능성 (15점)	▪ 시장 확대 가능성 (신규 시장형성 가능성) ▪ 다수의 창업 가능 여부	15	12	9	6	3	
사업화 가능성 (20점)	▪ 국내도입 용이성(국내시장 적합여부) ▪ 사업 아이템의 지속가능성 ▪ 아이템 활용가능성	20	16	12	8	4	
소상공인 적합성 (15점)	▪ 소상공인 사업진입의 용이성 ▪ 소액투자(2억원 내외)로 창업 가능여부	15	12	9	6	3	
합 계(100점)		-					

평가위원 : (인)

[붙임3] 서면심사 평가표

「제0기 00 소상공인 사관학교」
서 면 심 사 평 가 표

관리번호		평가일자	년 월 일
사업아이템			

구 분	세부항목					점수
창업자 역량 (40점)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매우충실	충실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 창업의지, 창업동기 및 신청사유의 명확성					
	매우명확	명확	보통	미흡	매우미흡	
	15	12	9	6	3	
	· e-러닝 사전 수강실적(학습시간 기준)					
	12시간 이상	8-11시간	4-7시간	1-3시간	미제출	
	5	4	3	2	1	
창업적성 검사 (50점)	· 창업적성검사 결과표의 1번 항목(창업적합성 진단결과)					
	진단 결과	매우 적합	적합	노력 필요	많은노력 필요	자료 미제출
	점수	50	40	30	20	0
개인신용평가 등급(10점)	1~3등급	4~6등급	7등급이하 또는 미제출			
	10	5	0			
가점 (자격증 보유 수) (최대5점)	· 창업업종과 관련 있는 자격증 보유 수					
	3개이상	2개	1개	미보유(미제출)		
	5	3	1	0		
계(100)						

평 가 의 견

평가위원 : (인)

【별표3】 면접심사 평가 종합보고서

「제0기 00 소상공인 사관학교」

면 접 심 사 평 가 종 합 보 고 서

년 월 일

0 0 0 0 위원회

[붙임1] 면접심사 종합표

「제0기 00 소상공인 사관학교」
면 접 심 사 종 합 표

구분	관리 번호	입교 신청자	창업아이템	위 원[1] 점 수					종합 평점	평균[2]	검토의견
				A	B	C	D	E			

1) 위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양식 추가
2) 평균점수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균값으로 한다.

[붙임2] 면접심사 평가표

「제0기 00 소상공인 사관학교」
면 접 심 사 평 가 표

평가일	년 월 일

관리번호	
신 청 자	
사업아이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점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창업 준비도 (70)	지원동기의 명확성(20)	20	18	16	14	12	10	8	6	4	2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20)	20	18	16	14	12	10	8	6	4	2	
	전문성(기술력, 동업종 경력 등)(15)	15	14	12	11	9	8	6	5	3	2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15) (투자금액, 조달방안 등)	15	14	12	11	9	8	6	5	3	2	
창업 마인드 (30)	창업의지, 열정, 적극성, 발전가능성 등(15)	15	14	12	11	9	8	6	5	3	2	
	창업을 위한 개인노력, 사전준비 등(15)	15	14	12	11	9	8	6	5	3	2	
총 점												

평 가 의 견

위 원 : (서명)

【별표4】 입교서약서

「제0기 00 소상공인 사관학교」
입 교 서 약 서

본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입교를 신청함에 있어 입교자로 선정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인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취소(퇴교),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아 래-

1. 이론교육 및 점포체험 교육기간 동안 교육생으로서 성실하게 교육을 이수 하겠습니다.
2. 소상공인 사관학교의 정부 지원 기준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 중 점포체험 기간 소요되는 비용 일부(원재료비 등 소모품비)는 본인 부담임을 확인합니다.
3.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이견 발생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의견을 준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4. 공단이 사업성과 점검 및 후속 지원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성실히 응할 것을 확인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표5】 이론교육 평가 종합보고서

「제0기 00 소상공인 사관학교」

이 론 교 육 평 가 종 합 보 고 서

년 월 일

0 0 0 0 위원회

[붙임1] 이론교육 종합표

「제0기 00 소상공인 사관학교」
이 론 교 육 종 합 표

구분	관리 번호	교육 수료자	사업아이템	위 원[1] 점 수					종합 평점	평균[2]	검토의견
				A	B	C	D	E			

1) 위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양식 추가
2) 평균점수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균값으로 한다.

[붙임2] 이론교육 평가표

「제0기 00 소상공인 사관학교」
이 론 교 육 평 가 표

관리번호		평가일자	년 월 일
교육수료자 성명		성 별	남 □ 여 □
사업아이템			

<table>
<tr><th rowspan="2">평가
항목</th><th rowspan="2">평가지표</th><th colspan="10">평점</th><th rowspan="2">점수</th></tr>
<tr><th colspan="2">매우
우수</th><th colspan="2">우수</th><th colspan="2">보통</th><th colspan="2">미흡</th><th colspan="2">매우
미흡</th></tr>
<tr><td rowspan="2">교육
상태
(20)</td><td>○ 출결상황(10)
<table>
<tr><td>구분</td><td colspan="2">매우우수</td><td colspan="2">우수</td><td colspan="2">보통</td><td colspan="2">미흡</td><td colspan="2">매우미흡</td></tr>
<tr><td>출결
상황</td><td>100%
출석</td><td>지각
1회</td><td>결석
1회</td><td>결석
1회
지각
1회</td><td>결석
2회</td><td>결석
2회
지각
1회</td><td>결석
3회</td><td>결석
3회
지각
1회</td><td>결석
4회</td><td>결석
4회·
지각
1회
이상</td></tr>
<tr><td>점수</td><td>10</td><td>9</td><td>8</td><td>7</td><td>6</td><td>5</td><td>4</td><td>3</td><td>2</td><td>1</td></tr>
</table>
※ 단 병가, 예비군훈련, 가족친족 사망 및 결혼은 예외
(관련 증빙서류 제출), 지각2회는 결석1회로 처리</td><td>10</td><td>9</td><td>8</td><td>7</td><td>6</td><td>5</td><td>4</td><td>3</td><td>2</td><td>1</td><td></td></tr>
<tr><td>○ 교육태도(10)
- 참여도
<table>
<tr><td>구분</td><td>매우우수</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매우미흡</td></tr>
<tr><td>점수</td><td>5</td><td>4</td><td>3</td><td>2</td><td>1</td></tr>
</table>
- 성실도
<table>
<tr><td>구분</td><td>매우우수</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매우미흡</td></tr>
<tr><td>점수</td><td>5</td><td>4</td><td>3</td><td>2</td><td>1</td></tr>
</table>
※ 교육태도는 강사가 수업 종료 후 공단에 직접 제출</td><td>10</td><td>9</td><td>8</td><td>7</td><td>6</td><td>5</td><td>4</td><td>3</td><td>2</td><td>1</td><td></td></tr>
<tr><td rowspan="3">사업
계획서
(40)</td><td>○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의 적절성(15)</td><td>15</td><td>14</td><td>12</td><td>11</td><td>9</td><td>8</td><td>6</td><td>5</td><td>3</td><td>2</td><td></td></tr>
<tr><td>○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15)</td><td>15</td><td>14</td><td>12</td><td>11</td><td>9</td><td>8</td><td>6</td><td>5</td><td>3</td><td>2</td><td></td></tr>
<tr><td>○ 시장성 및 수익성(10)</td><td>10</td><td>9</td><td>8</td><td>7</td><td>6</td><td>5</td><td>4</td><td>3</td><td>2</td><td>1</td><td></td></tr>
<tr><td rowspan="2">발표평가
(40)</td><td>○ 창업 마인드 및 가치관(20)</td><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d>10</td><td>8</td><td>6</td><td>4</td><td>2</td><td></td></tr>
<tr><td>○ 판매전략 및 마케팅 능력, 실현가능성(20)</td><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d>10</td><td>8</td><td>6</td><td>4</td><td>2</td><td></td></tr>
<tr><td colspan="12">계(100)</td><td></td></tr>
</table>

평 가 의 견

위 원 : (서명)

【별표6】 점포체험 교육 수행일지

「제0기 00 소상공인 사관학교」 점포체험 교육 수행일지

교육생 성명	(인)	교육기간	○ 월 ○ 일 ~ ○ 월 ○ 일
사업아이템			
수행일자	○주차(○월 ○ 일~ ○월 ○일)		

□ 점포체험 성과(매출액 및 방문고객 수)

매출액(주간합계)	천원	방문고객 수(주간합계)	명

※ 내용이 많을 경우 추가로 작성해주시고 증빙자료는 별첨

구 분		내 용
주간 추진 사항	마케팅 활동 (실적)	
	기타	
차주 추진 계획	마케팅 활동 (계획)	
	기타	

위와 같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별표7】 점포체험 교육 완료보고서

「제0기 00 소상공인 사관학교」 점포체험 교육 완료보고서

교육생 성명	(인)	교육기간	0월 0 일 ~ 0월 0 일
사업아이템		완료일자	2015년 0 월 0 일

□ 점포체험 성과(매출액 및 방문고객 수)

구분	1개월	2개월	3개월
매출액	천원	천원	천원
방문고객 수	명	명	명

□ 실습 체험내용(요약)

※ 내용이 많을 경우 추가로 작성해주시고 증빙자료는 별첨

구 분	내 용
체험 내용	
효과 및 성과	
향후 지원사업 연계방안	

위와 같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별표8】 점포체험 교육 평가 종합보고서(신설)

「제0기 00 소상공인 사관학교」

점포체험 교육 평가 종합보고서

년 월 일

0 0 0 0 위원회

[붙임1] 점포체험 교육 종합표(신설)

「제0기 00 소상공인 사관학교」
점 포 체 험 교 육 종 합 표

구분	관리 번호	교육 수료자	사업아이템	평가항목[1] 점수				합계	검토의견
				A	B	C	D		

1) 평가항목 : A-점포실적, B-마케팅활동, C-매장운영, D-매니저평가

[붙임2] 점포체험 교육 평가 결과표(신설)

「제0기 00 소상공인 사관학교」
점 포 체 험 교 육 평 가 결 과 표

관리번호		교육수료자 성명	
평가기간	0월 0일 ~ 0월 0일	교육기간	0월 0일 ~ 0월 0일
사업아이템			

<table>
<tr><th rowspan="2">평가
항목</th><th rowspan="2">평가지표</th><th colspan="3">평가결과</th><th rowspan="2">점수</th></tr>
<tr><th>평가전월</th><th>평가월</th><th>증가율
(합계)</th></tr>
<tr><td rowspan="3">점포
실적
(40)</td><td>○ 월별 매출액 증가 추이(평가월 기준)
<table><tr><td>구분</td><td>전월대비
10%이상</td><td>전월대비
10%미만)</td><td>전월대비
하락</td></tr><tr><td>점수</td><td>20</td><td>14</td><td>8</td></tr></table></td><td></td><td></td><td></td><td></td></tr>
<tr><td>○ 월별 방문고객 수 증가 추이(평가월 기준)
<table><tr><td>구분</td><td>전월대비
10%이상</td><td>전월대비
10%미만</td><td>전월대비
하락</td></tr><tr><td>점수</td><td>20</td><td>14</td><td>8</td></tr></table></td><td></td><td></td><td></td><td></td></tr>
<tr><td>마케팅
활동
(20)</td><td>○ 마케팅활동 회수(평가기간 기준)
<table><tr><td>구분</td><td>15건
이상</td><td>14건
~10</td><td>9건~
7건</td><td>6건~
4건</td><td>4건
미만</td></tr><tr><td>점수</td><td>20</td><td>16</td><td>12</td><td>8</td><td>4</td></tr></table>* 온라인(페이스북, 블로그, 카스 등) 및 오프라인(전단지 배포 등) 활동 횟수</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매장
운영
(20)</td><td>○ 매장 청결도
<table><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2">점 수</td><td rowspan="2">합 계</td></tr><tr><td>평가전월</td><td>평가월</td></tr><tr><td>우수</td><td>5</td><td>5</td><td>10</td></tr><tr><td>보통</td><td>3</td><td>3</td><td>6</td></tr><tr><td>미흡</td><td>1</td><td>1</td><td>2</td></tr></table></td><td></td><td></td><td></td><td></td></tr>
<tr><td>○ 고객 친절도
<table><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2">점 수</td><td rowspan="2">합계</td></tr><tr><td>평가전월</td><td>평가월</td></tr><tr><td>우수</td><td>5</td><td>5</td><td>10</td></tr><tr><td>보통</td><td>3</td><td>3</td><td>6</td></tr><tr><td>미흡</td><td>1</td><td>1</td><td>2</td></tr></table></td><td></td><td></td><td></td><td></td></tr>
<tr><td>전담
매니저
평가
(20)</td><td>○ 문제점개선, 적극성, 태도 등
<table><tr><td>구분</td><td>매우우수</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매우미흡</td></tr><tr><td>점수</td><td>20</td><td>16</td><td>12</td><td>8</td><td>4</td></tr></table></td><td></td><td></td><td></td><td></td></tr>
<tr><td>계</td><td colspan="4"></td><td></td></tr>
</table>

OO 소상공인 사관학교

전담매니저 : (서명)

[붙임3] 점포체험 교육 평가표(신설)

「제0기 00 소상공인 사관학교」
점 포 체 험 교 육 평 가 표

교육생 성명		교육기간	0월 0일 ~ 0월 0일
사업아이템			
평가주차	0주차(0월 0 일~ 0월 0일)		

평가항목	평가지표	결과
점포 실적	○ 매출액 증가 추이 * 주간 합계로 표시	천원
	○ 월별 방문고객 수 증가 추이 * 주간 합계로 표시	명
마케팅 활동	○ 마케팅활동 회수 * 온라인(페이스북, 블로그, 카스 등) 및 오프라인(전단지 배포 등) 활동 횟수	건
매장 운영	○ 매장 청결도 * 우수, 보통, 미흡 중에서 평가	
	○ 고객 친절도 * 우수, 보통, 미흡 중에서 평가	
전담매니저 평가	○ 문제점개선, 적극성, 태도 등 * 우수, 보통, 미흡 중에서 평가	

00 소상공인 사관학교

전담매니저 : (서명)

【별표9】 종합평가 보고서(신설)

「제0기 00 소상공인 사관학교」

종 합 평 가 보 고 서

년 월 일

0 0 0 0 위원회

[붙임1] 사관학교 종합평가표(신설)

「제0기 00 소상공인 사관학교」
종 합 평 가 표

구분	관리 번호	교육 수료자	사업아이템	이론교육 평가점수	점포체험교육 평가점수	합 계	검토의견

【별표10】 멘토링 업체 등록 신청서

멘토링 업체 등록 신청서

<table>
<tr><td>기 관 명</td><td colspan="2"></td><td>대표자명</td><td></td></tr>
<tr><td rowspan="2">연 락 처</td><td>사무실</td><td></td><td>팩스</td><td></td></tr>
<tr><td>휴대폰</td><td></td><td>E-mail</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신청권역</td><td colspan="4">① 서울·수도권 및 강원권 〔 〕 ② 부산·경남권 〔 〕 ③ 대구·경북권 〔 〕
④ 광주·전라 및 제주권 〔 〕 ⑤ 대전·충청권 〔 〕
※ 중복신청 가능</td></tr>
<tr><td>지원업종</td><td colspan="4">① 도·소매업 : ㉠잡화 〔 〕 ㉡식품 〔 〕 ㉢의류 패션 〔 〕 ㉣기타 〔 〕
② 서비스업 : ㉠교육 〔 〕 ㉡오락 〔 〕 ㉢미용 〔 〕 ㉣수리 〔 〕
㉤임대 〔 〕 ㉥운송 〔 〕 ㉦가사 〔 〕
③ 기타업종(입지중심형 업종 중 ①,②를 제외한 업종) : 〔 〕
※ 멘토링 수행 가능한 업종 중 복수로 체크가능</td></tr>
</table>

본인은 전담 멘토링 지원 신청을 하고자 위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인)

[붙임1] 기관현황

기관 현황

1. 보유인력현황

구 분	이름	직위	전공	전문분야	경력년수
대 표 자		*대표이사*			
① 상근 컨설팅 (대표자 제외)					
② 비상근 컨설팅					
총 명(교육에 투입할 인력만 기재)					

2. 최근 2년간 기관 컨설팅실적

프로그램명		일자	대상	인원	시간
'13년 (1월 이후)		*4.10~11*	*소상공인*	*30명*	*12hr*
			예비창업자		
	소 계			명	hr
'14년					
	소 계			명	hr
합 계 ('13년 ~ '14년)				명	hr

*** 기관실적은 공공기관, 지자체, 협회 등 수행실적을 말함**

3. 기관 소개서(자유롭게 기술)

설립 목적	
주요 사업 실적	
조직 및 인원현황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예시> 컨설팅 전문성(소상공인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수상 내역	*<예시> 대표, 컨설턴트 등의 외부 수상내역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기관의 비전	

[붙임2] 보유인력 이력사항

「소상공인 사관학교」 멘토링 인력 이력사항

성 명		직 위	
전문분야		연 령	만 세
해당분야 경력	년	상주/비상주 구분	□ 상주 □ 비상주

1, 컨설팅 경력

컨 설 팅 기 관	컨설팅기간	컨설팅명	컨설팅 내용

2, 자격사항

취 득 년 월 일	자 격 · 면 허 증	시 행 처

3, 수상내역

수 상 명	수상내용	수상일자	기 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명 : (서 명)

* 실적은 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시 인정(별첨)

【별표11】 멘토링 협약서

「소상공인 사관학교」 멘토링 협약서

○ **과 제 명** :　　년도 OO 소상공인 사관학교 멘토링 지원

○ **협약당사자**

- "갑"(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이일규
- "을"(교 육 생)
- "병"(멘토링업체)

제1조(협약목적) 이 협약은 "00년도 OO 소상공인 사관학교 멘토링지원사업"에 있어서 협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을"과 "병"은 동 협약체결일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제3조(멘토링비) 멘토링비는 제2조의 사업기간 안에 "을"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200만원을 지급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50만원을 지급한다.

제4조(의무) ① "을"과 "병"은 동 협약서 및 수행계획서의 지원 내용과 일정에 의거 "멘토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본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지원하는 신의, 성실, 근면의 의무를 갖는다.

③ "병"의 업무상의 모든 지식과 기술이 "을"의 견해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을"의 견해를 수용하여야 하며,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5조(완료보고) "병"은 협약기간 완료 후 10일 이내에 "갑"과 "을"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점검) "을"과 "병"은 중기청 및 "갑"의 평가점검자 등으로부터 멘토링의 현장점검을 받아야 하며, 평가 시 관계자의 면담이나 현장 확인, 자료제

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할 시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7조(비밀보장) ① "병"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획득한 "을"의 모든 사업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② "병"은 사업수행 전 후를 막론하고,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갑"과 "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③ "을"과 "병"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쌍방의 사전 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고, "을"과 "병" 중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하도급 금지) "병"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일반적 손해) "을"과 "병"은 사업의 수행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협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 거래상의 관습에 의한다.

제10조(사위행위 및 멘토링 참여 제한) ① "을"과 "병"이 공모하여 허위로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사위행위를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병"은 멘토링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기 지급 받은 멘토링 비용은 "갑"에 즉시 반환한다.

② "을"이 "병"의 멘토링비 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병"은 멘토링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③ 동조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병"은 멘토링 사업 참여제한 등 공단 관련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는다.

제11조(협약의 해지) "갑"과 "을"과 "병"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제7조, 제8조에 위반하는 경우

다.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을”과 “병”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갑”이 마련한 소상공인 사관학교 운영지침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과 “갑”의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갑”, “을”, “병”은 변경된 법령 등을 본 협약에 적용한다.

③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사관학교 운영지침” 및 “갑”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년 월 일

(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2~3층
이 사 장 (인)

(을) 교육생 성명 : (인)
주 소 :

(병) 멘토링기관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표12】 멘토링 수행계획서

「소상공인 사관학교 」멘토링 수행계획서

멘토링 업체명		교육생 성명	
사업아이템명		멘토링 기간	~
점포명 및 주소			

□ 멘토링 수행 계획

구분	내용		
수행 목표			
세부 수행 계획	회차	추진계획	멘토링 수행자명
	1		
	2		
	3		
	4		
	5		
	6		
	…	* 공간 부족시 별도 용지에 추가 작성 가능	
기대 효과			

【별표13】 멘토링 완료보고서

「소상공인 사관학교 」멘토링 완료보고서

멘토링 업체명		교육생 성명	
사업아이템명		멘토링 기간	~
점포명 및 주소			

□ 멘토링 개요

구분	내용
수행 목표	
수행 결과	
향후 일정	

□ 세부 멘토링 수행 결과

○ 멘토링 수행과제 및 수행결과

회차	수행과제	회차	수행결과
1		1	
2		2	
3		3	
4		4	
5		5	
6		6	

※ 내용이 많을 경우 추가 가능

○ 멘토링 성과 및 향후 지원 방향

위와 같이 멘토링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멘토링 수행자 : (서명 또는 인)

【별표14】 강사 만족도 설문지

「제0기 00 소상공인 사관학교」 강사 만족도 설문지

□ 이 설문조사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강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 사항

성 별	□ 남 □ 여
연 령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교육과정	00 교육 / 00 전용교육장
교육일자	00년 월 00일부터 00월 00일까지 (0)시간

2. 교육 강사 만족도 조사(해당란에 체크해주세요)

(강사1) 이름 홍길동 담당과목 : SNS 마케팅 전략(예시)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교육의 구성 및 내용이 충실하다	⑤	④	③	②	①
2. 교육 내용을 알기 쉽게 잘 전달한다	⑤	④	③	②	①
3. 교육이 현실에 적용하는데 효과적이다	⑤	④	③	②	①
4. 교육 내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⑤	④	③	②	①

(강사2) 이름 김수철 담당과목 : 성공 CEO 전략(예시)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교육의 구성 및 내용이 충실하다	⑤	④	③	②	①
2. 교육 내용을 알기 쉽게 잘 전달한다	⑤	④	③	②	①
3. 교육이 현실에 적용하는데 효과적이다	⑤	④	③	②	①
4. 교육 내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⑤	④	③	②	①

【별표15】 위원회 의결서 양식(신설)

2015년 00 소상공인 사관학교 0차 운영위원회 의결서

의결 안건	❍ 의결안건 1 : ❍ 의결안건 2 :
<안건1> 세부 의결 사항	❍ ❍ ❍ ❍
<안건2> 세부 의결 사항	❍ ❍ ❍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15년 월 일 2015년 OO 소상공인 사관학교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구성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표16】 서약서(평가위원)

「제0기 00 소상공인 사관학교」
서 약 서 〔평 가 위 원〕

본인은 소상공인 사관학교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교육생 선정·평가 관련하여 심사 대상자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며,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표17】 교육생 명부

「제0기 00 소상공인 사관학교」 교육생 명부

* 매니저는 교육생 개인정보를 교육생 명부에 기입하고, 교육생 서명은 출석표를 사용

교육구분	OO 소상공인 사관학교 OO 교육
기수	제 기
교육기간	~

NO	성명	생 년 월 일	연락처	
			전화(휴대폰)	이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별표18】 교육생 출석부

「제0기 00 소상공인 사관학교」 교육생 출석부

* 이름은 정자체로 기재 바랍니다.

교육일시		2015년 0월 00일 (0시간/0일차)	
교육프로그램		과목명 기재	과목명 기재
NO	성명	00:00~00:00	00:00~00: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위 교육생이 성실히 교육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 사관학교 매니저 (서명)

【별표19】 교육생 교육태도 평가표(신설)

「제0기 00 소상공인 사관학교」 교육생 교육태도

* 이름은 정자체로 기재하여 주시고, 교육 종료 후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시	2015년 O월 OO일 (O시간/O일차)
교육프로그램	과목명 기재

NO	성명	참여도(5점)	성실도(5점)
		매우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미흡(1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위 교육생이 성실히 교육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 사관학교 강사 (서명)

【별표20】 교육비 예산편성 기준

「소상공인 사관학교 」교육비 예산편성 기준

항목	지 급 기 준
강사비	○ 시간당 25만원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붙임1> 강사비 지급기준 준용) - 강사 교통비 : KTX기준 실비정산, 단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 - 스타강사비 : 2백만원/Hr 이내(2시간)
교재제작비	○ 30천원 이내/권 실비정산 - 권수=((교육인원+강사)×1.2)+비치용 2권
홍보비	○ 700천원 이내(사관학교별)
문구비	○ 교육인원×3천원 이내
실습재료비	○ 교육인원×100천원 이내
견학차량비	○ 1백만원 이내(사관학교별)
음료 및 다과비	○ 교육일수×교육인원×2천원

*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필요시 예산 범위내 항목 신설 또는 조정해 적용

[붙임1] 강사비 지급기준

「소상공인 사관학교 」강사비 지급기준

구 분	가급	나급	다급
금 액	250,000원 (2시간 초과시 시간당 220,000원)	200,000원 (2시간 초과시 시간당 170,000원)	150,000원 (2시간 초과시 시간당 120,000원)
학 계	정교수 이상 또는 박사로서 15년 이상 경력자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로서 5년 이상 경력자	조교수 이하 또는 박사학위 5년 미만 경력자
업 계	상장기업 대표이사 이상	임원 이상	부장 이하
기 관	공공기관 기관장	공공기관 상근임원	공공기관 직원
경제단체/ 협회	전국규모의 경제단체/ 협회의 대표	전국규모의 경제단체/ 협회의 상근임원	전국규모의 경제단체/ 협회의 직원
언론계	국장 이상	부장 이상	부장 미만
연구기관	국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상	국책연구원 연구위원·부연구원	국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이하
(국가공인) 전문자격증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서 10년 이상, 경영지도사, 기술사, 유통관리사 등 18년 이상 경력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또는 경영지도사, 기능장, 유통관리사 등 8년 이상 경력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서 5년 미만 또는, 경영지도사, 기사이하, 유통관리사 등 8년 미만 경력자
기능 자격증	미용사, 조리사 등 기능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20년 이상 경력자	미용사, 조리사 등 기능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자	미용사, 조리사 등 기능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10년 미만 경력자
소상공인 교육 등	소상공인교육 등 교육경력 20년 이상 경력자	소상공인교육 등 교육경력 10년 이상 경력자	소상공인교육 등 교육경력 10년 미만 경력자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증 기준 업력 20년 이상 성공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증 기준 업력 10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증 기준 업력 10년 미만 소상공인
비 고	레크리에이션, 기체조, POP, 웃음, 건강, 외국어 등 소상공인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교양과목을 지도하는 강사로서 일괄적으로 다급으로 지급		

* 강사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도 필요한 경우 교육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비는 강사비 지급 기준을 적용